

5.1.17 학교기업운영세칙

제정 2015. 06. 17.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세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「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(대통령령 제 20740호)을 준용한다.

제3조(명칭) 이 학교기업 명칭은 "학교기업 초당 Drone Pilot School"(이하 "학교기업"이라 한다)라 한다.

제4조(소재지) 학교기업의 주된 사업장은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초당대학교 내에 두고, 필요에 따라 분 사업장을 둘 수 있다.

제5조(기능) 학교기업은 학생의 현장실습교육을 통하여 취업 촉진에 기여하고, 산학연 교육사업의 기능과 제품의 생산, 판매를 통한 수익사업을 한다.

제6조(대표 및 학교기업의 장 등) ① 학교기업의 대표는 총장이 된다.

② 학교기업의 장의 임명은 학교기업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총장은 학교기업의 운영을 학교기업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7조(학교기업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 학교기업의 운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기업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인과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 2인, 간사 1인을 둔다.

제8조(위원장 등) ① 위원회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은 기획연구처장, 교무처장, 사무처장, 학교기업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9조(회의 등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.

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, 비치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학교기업 설치·운영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
2. 학교기업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
3. 학교기업의 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학교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

제11조(현장실습) ① 학교기업은 대학의 교육에 관련된 현장실습과정을 개설한다.

②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학과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기업의 장이 정한다.

제12조(재산의 관리 등) ①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재산의 양도, 증여, 임대, 교환, 포기
2. 예산외 채무의 부담
3. 채권의 포기
4. 차입금

② 학교기업이 취득한 장비 등 자산은 대학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(회계원칙 등) ① 학교기업의 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.

② 학교기업의 회계 운영절차에 관하여는 대학회계규정을 적용한다.

③ 학교기업 국고지원금에 대한 구매 및 지출 업무는 대학의 회계부서에서 담당한다.

제14조(수입)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
2. 학교기업 활동 결과의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 일체

제15조(지출) ①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 해당된 사항에 대하여 지출을 할 수 있다.

1. 학교기업의 관리·운영비
2. 학교기업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
3. 학교기업 수익금 중 대학발전기금 기부
4. 그 밖에 학교기업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

②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·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교기업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시,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 순이익의 20%범
위내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다.
2.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,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 이내로 한다.
3. 제1호 및 제2호의 보상금 수혜대상자 및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정한다.

제16조(회계연도) 학교기업의 회계연도는 대학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7조(직원의 인사, 복무 등) 학교기업 직원의 인사, 복무, 보수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기업의 장
이 따로 정한다.

제18조(세칙의 개정) 이 세칙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대학규정 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